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1
----------	------

제출일자: 2017. 6. 27.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제6조)이 신설되었으며, 제6조 2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명시됨에 따라,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

3. 주요 개정 내용

- 관련법 조항 신설에 의거 제1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변경, 제3조제2항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 및 자구 수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05.26.~07.15.)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같은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u>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p> <p>① <u>위원회</u>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구성)</p> <p>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구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한 수석 부위원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p> <p>③ (생략)</p> <p>1~5 (생략)</p> <p>제6조(위원의 <u>해촉</u>)</p> <p>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u>해촉</u>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p> <p style="text-align: center;">----- 「<u>지역보건법</u>」 제6조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p> <p>제2조(기능)</p> <p>① <u>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p> <p>① ----- 명 ----- 명 ----- 명 ----- -----</p> <p>② ----- <u>부구청장</u> ----- -----</p> <p>③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u>위촉해제</u>)</p> <p style="text-align: center;">----- 위촉해제 ----- -----</p>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보건위생과 간호7급 정 나 래

보건위생과장 김 해 숙